會　　則

제정　1972. 11. 20
전문개정　2008.　6. 24
개정　2009.　3. 18
전문개정　2013. 10. 22
개정　2021.　1.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부로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분회) ①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구에 분회를 둔다.
② 본회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의 앙양과 간호봉사에 관한 사항
3. 간호교육 및 간호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4. 간호발전 및 간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7. 간호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9.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 및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 총회

제8조(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의결권) ①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수) 대의원은 각 분회 별 기본대의원 1명 외에 분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30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개정 2021.1.27.)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15일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하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분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상정안건)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중앙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7.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6조(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20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7조(총회 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18조(개의)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제19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26조 제3호 및 4호의 자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분회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2.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임원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앙회 임원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절　이사회

제22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분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장 선출 및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26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이　　사　　13명(회장단 포함)
4. 분 회 장　　25명(각 구간호사회장)
5. 감　　사　　2명

제27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8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0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31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32조(당연직 임원) 분회장은 당연히 임원이 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분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 거

제34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회장 후보자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5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부회장 후보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2명씩 추천한 이사 후보 중 대표자회의에서 17명을 선정하고 제34조 회장 선출시 차점자와 제35조 부회장선출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7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감사 후보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8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 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④ 분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0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42조(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상임위원회 임무)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관리위원회
   가.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법·윤리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분회 회칙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술위원회
   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간호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사항

다. clinical simulation lab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성금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마. 기본금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예산외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사. 회관관리에 관한 사항

5. 홍보위원회
가.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대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6. 복지위원회
가. 회원의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 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본 부

제45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제46조(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수행하며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2.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5.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4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성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 결의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예산 및 결산) 재무이사는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분 회

제52조(명칭)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구간호사회라 칭한다.

제53조(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회무)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55(총회)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56조(분회 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57조(해산) 분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분회 총회의 결의와 본회 대의원총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58조(잔여재산의 처리) 분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제 10 장 보 칙

제61조(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 10.22)

제 1 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7.)

제 1 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